

임시직원운영세칙 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정부 지침*에 따른 '동일가치 노동-동일임금' 취지와 임금상승률 변동사항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임시직원 보수지급 기준 개정

*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」('17.7.20, 관계부처 합동)

2. 주요 개정 내용

임시직원 보수지급 기준을 공사 동일·유사 업무 수행 직원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1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BIFC 18층 인사처
- 담당자(이메일) : jwj@khug.or.kr
- 전화번호 : 051-955-5373
- 팩스번호 : 051-955-5376

4. 예고기간 단축사유

신속한 임시직원 보수지급 기준 개정으로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

첨부 임시직원운영세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
[별지]

임시직원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

현 행	개 정 안	개정 사유
[별표 1] 보수지급 기준표	[별표 1] 보수지급 기준표 * 개정내용 별첨1 참조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1년 8월 00일부터 시행한다.	정부 지침 취지 (동일가치 노동-동일임금) 및 임금상승률 변동 사항 등 반영

[첨부 1] 제21조 별표1(보수지급기준표) 일부 개정안

현행				개정안				개정 사유	
[별표 1] <u>보수지급 기준표</u> ☐ 최초 고용계약시				[별표 1] <u>보수지급 기준표</u> ☐ 최초 고용계약시				정부 지침 취지 (동일가치 노동-동일임금) 및 임금상승률 변동 사항 등 반영	
구분		연간총액임금 (연봉)	월통상임금 (급여)	구분		연간총액임금 (연봉)	월통상임금 (급여)		비고
사무직		연1,920만원	월160만원	사무직		공사 동일·유사 업무 수행 직원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계약 체결시 별도로 정함			※ (좌 동)
비서직	사장	연2,760만원	월230만원						
	일반	연2,400만원	월200만원						
운전직	임원용 ¹⁾	연3,000만원	월250만원	운전직					
	업무용	연2,640만원	월220만원						
특정직		사장이 고용계약 체결시 별도로 정함							
일용직		예산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일당금액							
1) 사장, 상근감사위원 및 본부장				<삭 제>					
☐ 재계약시 - (생략)				☐ 재계약시 - (현행과 같음)					